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3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서지영·고동진·조승환
서천호·김미애·곽규택
정성국·박충권·성일종
나경원·이성권·최수진
김대식·박성훈·조정훈
김도읍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같은 검증·인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도입·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령의 기준에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 중 교육 자료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